

대외 무역 수입 수량 제한 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안

외교통상위원회

'수출규제' 3개 품목 수입량 0건...반도체 산업 빨간불

제안이유

1. 기업의 경제적 타격
2. 소비자의 소비 활동 위축
3. 내수 경제 약화 불안

대한민국 수입 상위 국가 건수

국가	건수
미국	5,970,670
중국	1,780,353
일본	1,001,538
베트남	203,701
대만	141,108
홍콩	120,441
싱가포르	69,591
인도	58,355
멕시코	40,715

출처 : 관세청

현행

개정안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중략>

⑧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이
었거나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이하 "긴급관
세"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잠정 긴급관세
(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
하여는 ...

<중략>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중략>

<신설조항>

**⑨국가주도사업의 한 품목에 대한 소수
국가의 수입의존도가 높을 경우, 수입
량과 수입 제한 기간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령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대효과

1. 한 품목의 소수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 감소
2. 국가 경제 안정 도모

기대효과

3. 국민의 소비활동의 폭 확대

4. 다양한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역활동 기대

질의 및 응답

감사합니다